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74

발의연월일: 2021. 8. 2.

발 의 자: 박홍근 · 김남국 · 김두관

김상희 · 김윤덕 · 남인순

문정복 · 서영석 · 안민석

이동주・천준호・한준호

홍정민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 「동물보호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실태조사 정보를 공표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폐업한 영업자가 해당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자체 등록·허가 현황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영업장이 상이한 경우가 많음.

이에, 「동물보호법」 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에 따른 효율적인 영업자 점검 및 영업장 정보 현행화를 위해 지자체의 직권말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제도관리를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 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 사항을 직권 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5항 신설).
-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 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제6항 신설).
-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영업장에 대한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신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 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3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에 영업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 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영업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2.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 ④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영업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
	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
	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
	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u>말소할 수 있다.</u>
<u><신 설></u>	<u>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u>
	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
	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38조(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	제38조(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
	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명령	을 후	비반さ	하여	계속	영약	널을
하는	경우	우에	영안	를 등	록 5	돈는
허가	를 추	취소하	하거니	- 구 영	업장	폐
쇄를	명힐	· 수	있디	-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 우에는 영업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 할 수 있다.
-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2.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경우

<u>4</u>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u>에</u>	